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 5. 26(월)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5월 10일 이천시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3년 5월 12일
- 다. 상 정 일 자 : 제6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1차(2003. 5. 23)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가. 제안이유

- 우리시 3만여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중인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의 적정·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제1조)
-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함.(안제6조)
-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안제4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규하)

- 본 조례안은 이천시 440여개업체 3만여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운영의 적정·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복지관의 위치를 제3조는 기능을 제4조는 위탁 및 임대운영을 정하였으며, 제5조는 사용허가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6조, 제7조는 사용료 활용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8조는 사용제한 등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제9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기술하였으며, 제10조는 위탁의 제한 또는 취소에 대해 관계 규정을 두었고 제11조는 권리의 양도 금지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2조, 제13조는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제14조는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제15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 감독권한을 두었으며, 제16조는 자체운영규정을 두었고, 제17조는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준용사항을, 제18조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규칙을 정한 조례로써,

- 검토결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시민으로 하여금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히고 동시에 그 조례의 조문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을 부여하기 위해 조례의 내용에 목적규정을 두게 되는데, 본 조례의 경우 제1조에 목적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법규제정시 각 조항간의 정확한 의미규정을 위해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법규제정의 일반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제1조의 목적조항에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약칭을 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별첨과 같이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일부수정의결(만장일치)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일자 및 제안자 : 2003. 5. 23.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의 6인

나. 수정이유 : 본래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시민으로 하여금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의 달성 목적 등을 밝히고 동시에 그 조례의 조문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을 부여하기 위해 조례의 내용에 목적규정을 두게 되는데, 본 조례의 경우 제1조에 목적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조례의 달성목적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법규제정시 각 조항간의 정확한 의미규정을 위해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법규제정의 일반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제1조의 목적조항에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약칭을 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전문개정, 제12조 제1항의 경우 본문 내용과 상반되는 문구가 있어 정확한 법규제정을 위해 관련 조항을 일부수정.

다. 수정주요골자

- 목적조항에 조례의 달성목적 규정 마련(안 제1조)
- 각 조항의 정확한 의미 규정과 전달을 위해 제2조(명칭및위치)를 명칭(안제2조제1항)과 위치(안제2조제2항)로 구분하여 명칭부분에 약칭표기
- 본문 내용과 상반되는 문구가 있어 정확한 법규제정을 위해 관련 문구 수정.

※ 첨부: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에 대한 수정안

8. 기타사항 : 없 음